

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안내문

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주택건설량의 3% 범위 공급 (6세대)

대상주택	· 전용 85㎡ 이하 주택건설량의 3% 범위에서 공급										
	구분	49A	49B	59A	59B	74A	74C	74D	74E	74F	합계
	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2	3	-	1	-	-	-	-	-	6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해당하는 자 ·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·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*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*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*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.) 										
청약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- 세대주일 것 (※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청약이 불가합니다.) 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·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(*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 ·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(*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) · 기타사항은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름. 		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*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) 거주자가 우선함. ②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 ·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'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. ·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. 				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*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. ·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·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함. (*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 ·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*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										

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안내문

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배점기준표

주택건설량의 3% 범위 공급 (6세대)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 기간	32	만30세 미만 미혼 또는 유주택자	0	8년 이상~9년 미만	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) 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※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~2년 미만	4	10년 이상~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~3년 미만	6	11년 이상~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~4년 미만	8	12년 이상~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~5년 미만	10	13년 이상~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~6년 미만	12	14년 이상~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~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		7년 이상~8년 미만	16			
② 부양 가족수	35	0명	5	4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표 등·초본 ■ 가족관계증명서(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) ■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~만30세 미만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: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 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~9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)
		6개월 이상~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~2년 미만	3	10년 이상~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~3년 미만	4	11년 이상~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~4년 미만	5	12년 이상~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~5년 미만	6	13년 이상~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~6년 미만	7	14년 이상~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~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~8년 미만	9			

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